

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

동양정산 주식회사 (이하 '동양정산'이라 한다)와 _____ (이하 "협력사"라 한다)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은 동양정산과 협력사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법률 등 준수)

동양정산과 협력사는 상호간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"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" 등과 같은 관련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.

제 3 조 (공정한 거래의 보장)

동양정산과 협력사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.

1.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.
2. 협력사 등록 및 취소 관련하여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한다.
3.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감시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한다.

제 4 조 (상생협력 지원)

동양정산은 협력사를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생협력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.

1. 자금지원 프로그램 운영
2. 품질 및 기술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3.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
4. 협력회 조직 운영 등을 통한 협력사의 의견 수렴
5. 기타 각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
제 5 조 (협력사의 협력사항)

협력사는 동양정산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력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.

1.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
2. 자구노력 및 경영혁신 지속 수행을 통한 경쟁력 향상 추구
3. 철저한 품질관리 및 현장관리로 부품품질 향상에 매진
4. 생산성 향상, 공정개선, 물류혁신 등 비용절감 활동 생활화
5. 동양정산과의 거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 기술상 기밀 유지
6. 동양정산 임직원과의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의 수수 및 부당한 방법에 의한 거래 유인의 금지

제 6 조 (협약의 효력)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본다.

제 7 조 (유효기간)

동양정산 또는 협력사가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.

이
아
부

동 양 정 산 주 소 :

회사명 :

대표자 : (인)

협 력 사 주 소 :

회사명 :

대표자 : (인)